

1.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와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을 100분의 70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국방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22. ~ 4. 3.)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제1조(「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각 군 참모총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허가취소(법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

저하계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2조(「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
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
저하계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3조(「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
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별표에
따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4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5조(「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별표 23에 따른 처분이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15의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6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35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마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7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1) 및 2) 외의 부분 후단 중 “등록취소일 때”를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로, “감경(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감경”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시·도지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등록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일 경우 그 처분기준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마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8조(「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4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표시금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30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의 표시금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

저하계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9조(「어선법 시행규칙」의 개정)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별표 18의2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제2호
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마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
저하계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19의2 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
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
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제2호의 개별
기준에 따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
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나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10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 중 “다목·라목 및 바목”을 “다목·라목·바목 및 사목”으로 한다.

사.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바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11조(「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마목 중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마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3 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마.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바. 법 제24조제4항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상속으로 인하여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다가 3개월 이내에 그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6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제12조(「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 라목 중 “제48조제6항제1호, 제6호”를 “제48조제6항제1호, 제3호, 제6호”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지정취소(법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4호,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1호, 제12호, 제48조제6항제1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54조제1항제1

호, 제4호,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13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마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14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75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마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
우에도 적용한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② (생략)	제7조(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별표에 따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u> 1. <u>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u> 2. <u>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u>

	<u>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u>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3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①·② (생략)	제53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별표 23에 따른 처분이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